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대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87

발의연월일: 2024. 6. 14.

발 의 자: 강대식 · 구자근 · 권영세

강승규・조지연・김장겸

임이자 · 김예지 · 이종배

김위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6·25전쟁 발발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 상황에서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·소녀들이 자원 또는 강제로 징집·소집되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음.

그러나 비슷한 연령대에 6·25전쟁에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 전부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는 것에 반해 6·25참전 소년·소녀병들은 전사자와 전상자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어 이들의생활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및 보상이 없는 실정임.

이에 6·25전쟁 당시 병역징집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되어 참전한 소년·소녀병들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켜 보상 및 교육·취업·의료지원 등에 있어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고자 함(안 제4조제1항제9호의2 신설, 안 제12조·제15조의2·제22조·제29조·제42조·제43조의2 및 제44조).

법률 제 호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의2. 6·25참전 소년소녀병(이하 "소년소녀병"이라 한다):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병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되어 병역을 이행한 만 17세 이하(징집 당시 기준)의 사람

제12조제1항제2호 중 "재일학도의용군인"을 "재일학도의용군인, 소년소녀병"으로 한다.

제15조의2제1항제1호 중 "사람 및 재일학도의용군인"을 "사람,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소년소녀병"으로 한다.

제22조제1항제1호 중 "재일학도의용군인"을 "재일학도의용군인, 소년소녀병"으로 한다.

제29조제1항제1호 중 "재일학도의용군인"을 "재일학도의용군인, 소년소년병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"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"를 "재일학도의용군인·소년소녀병의 자녀"로 한다.

제42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소년소녀병

제43조의2 중 "4·19혁명부상자"를 "4·19혁명부상자, 소년소녀병"으로 한다.

제44조제1항 중 "4·19혁명부상자"를 "4·19혁명부상자, 소년소녀병"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적용 대상 국가유공자) ①	제4조(적용 대상 국가유공자) ①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
당하는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	
는 가족(다른 법률에서 이 법	
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	
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은 이	
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.	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9의2. 6·25참전 소년소녀병(이</u>
	하 "소년소녀병"이라 한다): 1
	<u>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</u>
	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병
	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
	불구하고 징집되어 병역을 이
	행한 만 17세 이하(징집 당시
	<u>기준)의 사람</u>
10. ~ 18. (생 략)	10. ~ 18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12조(보상금) ① 다음 각 호에	제12조(보상금) ①
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	
지급한다. 다만, 이 법 또는 다	
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	
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	

하지 아니하다.

- 1. (생략)
- 2. <u>재일학도의용군인</u>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 위자 1명
- 3. 4. (생략)
- ② ~ ⑤ (생 략)
- 제15조의2(부양가족수당) ① 다음 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에 따라 부양가 족수당을 지급한다.
 - 1.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및 재일학도의용군인

2. • 3. (생략)

② ~ ④ (생 략)

- 제22조(교육지원 대상자 등) ① 지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(이하 "교육지원 대상자"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 훈자, 보국수훈자, <u>재일학도의</u> 용군인, 4·19혁명부상자, 4·

•
1. (현행과 같음)
2. 재일학도의용군인, 소년소녀
병
3. • 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5조의2(부양가족수당) ①
11011/1/6/17 1 6/ 1
,
1
사람,
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소년소
녀병
<u> </u>
2. 3. (년 8년 EB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22조(교육지원 대상자 등) ① -
에22조(프퓩시전 대경 가 등) ① -
1
<u>재</u> 일학도
의용군인, 소년소녀병

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. ~ 4. (생략) ② ~ ④ (생략)

- 제29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 ① 7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(이하 "취업지원 대상자"라 한 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 훈자, 보국수훈자, <u>재일학도의</u> 용군인, 4·19혁명부상자, 4·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
 - 2. ~ 4. (생략)
 - 5.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<u>재일</u>학도의용군인의 자녀
- ②·③ (생 략) 제42조(진료) ① ~ ⑥ (생 략)
 - ⑦ 7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

2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29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 ① -
1
<u>재일학도</u>
의용군인, 소년소녀병
2. ~ 4. (현행과 같음)
5
재일학
도의용군인・소년소녀병의 자
년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42조(진료) ① ~ ⑥ (현행과
같음)
⑦

람은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 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 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 을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진료비 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감면하며,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

- 1. (생략)
- 2. 재일학도의용군인
- 3. 4. (생략)
- ⑧ (생략)
- 제43조의2(보철구의 지급) 전상군 경, 공상군경, <u>4·19혁명부상자</u>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(補綴 具)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 철구를 지급한다.
- 제44조(의학적 재활 등) ① 국가 보훈부장관은 전상군경, 공상군 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 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신체 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 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 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

·.
<u>.</u>
1. (현행과 같음)
2.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소년소
<u> </u>
3.•4. (현행과 같음)
⑧ (현행과 같음)
제43조의2(보철구의 지급)
<u>4 · 19혁명부상자,</u>
<u>소년소녀병</u>
제44조(의학적 재활 등) ①
4·19혁명부상자, 소년소녀병

책을 마련하고, 그 사업을 수행	
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